서귀포시고시 제2026-137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

2026. 5. 13.

서 귀 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-3	효돈 초등학교	초등학교	서귀포시 신효동123-3	14,455	증) 959	15,414	제고 제1466호 ('77.8.31)	

나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-3	효돈 초등학교	·면적변경 - (기정)14,455㎡ → (변경)15,414㎡ [증 959㎡]	·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부지편입에 따라 경계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관계도면 : 게재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
3. 열람장소 : 서귀포시 도시과(☎ 064-760-2973)

□ 참고도면 - 효돈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

○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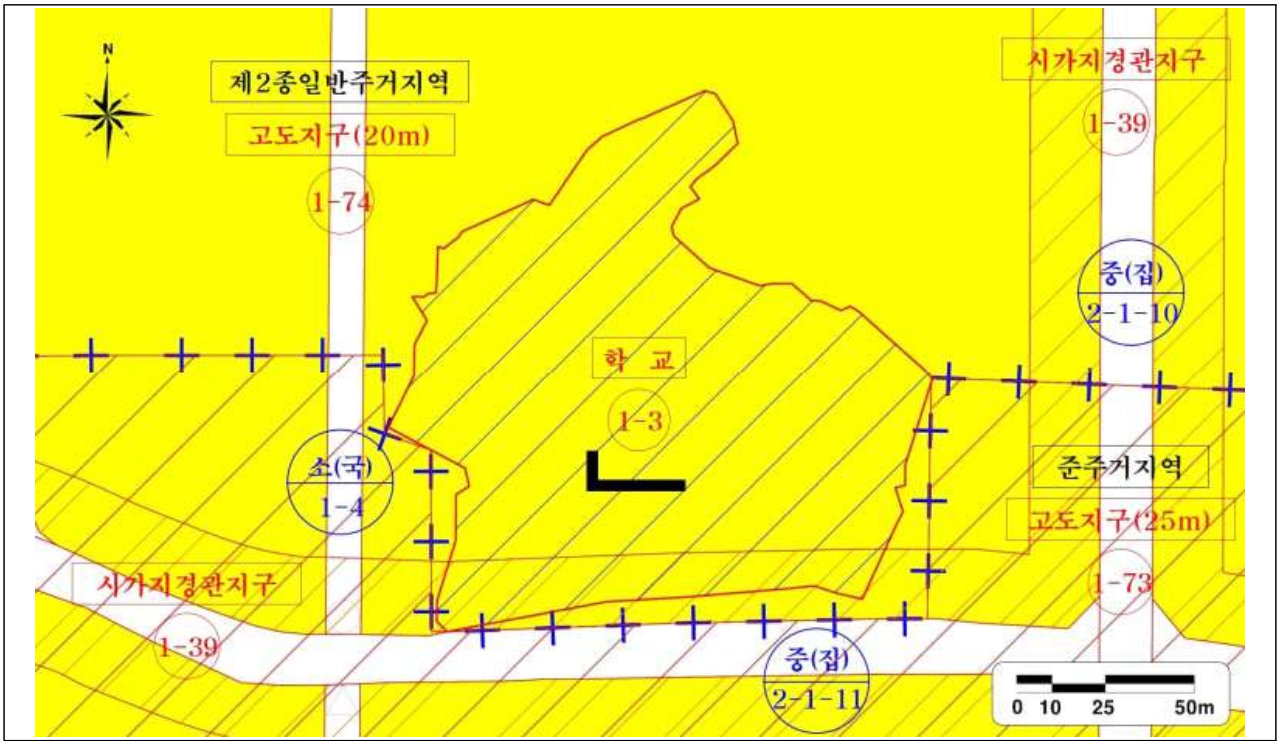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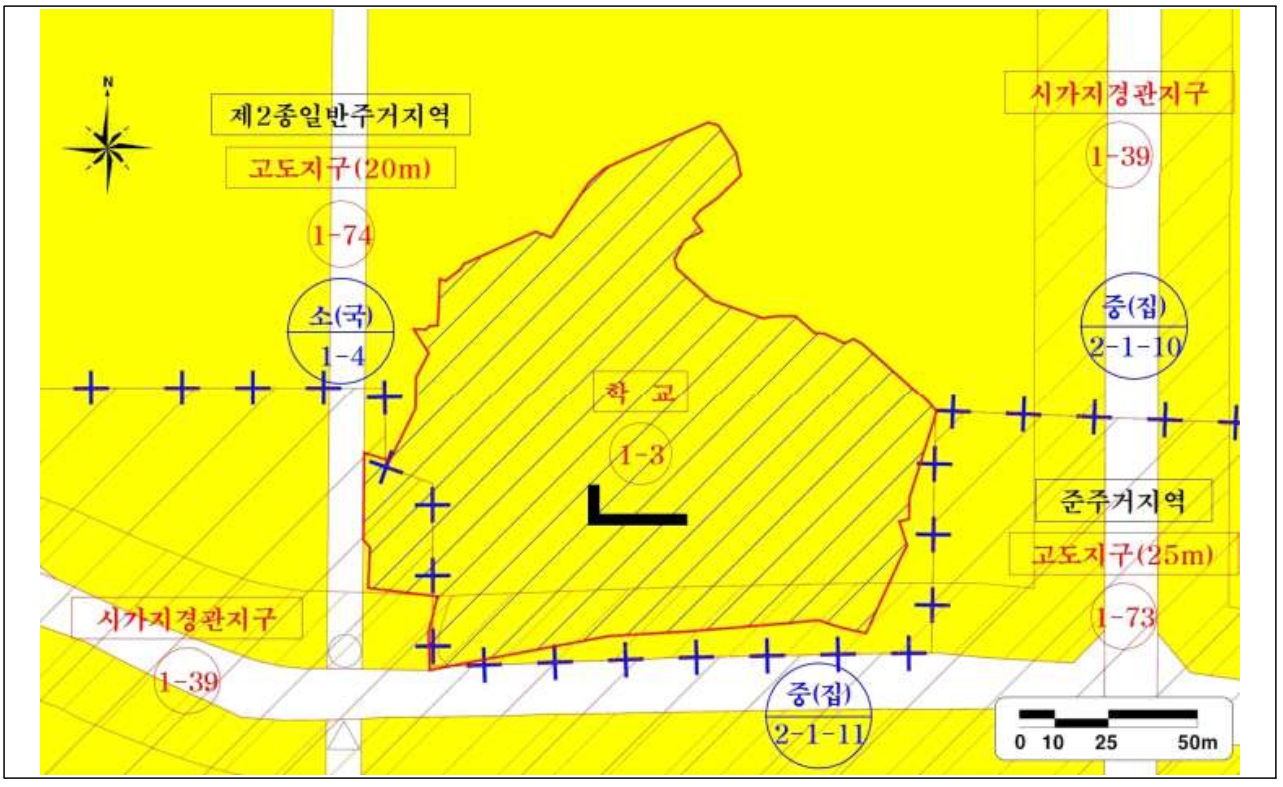
○ 변경